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08
----------	------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종사원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고용 추진하기 위하여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등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의 업무 위탁방법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신설·강화 규제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부패유발 우려 없음)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2016. 3. 31. ~ 4. 20.) 결과 :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작성자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정재연 (☎ 3146-118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민간 위탁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을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u>민간 위탁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u></p>	<p>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u>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을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u></p>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p>○ 조례 개정(안)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u>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을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p> <p>○ 제출의견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① 시장은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u>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u>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p>	<p>□ 반영여부 : 미반영</p> <p>○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의 위탁은 수도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추진함 - 시행령 제35조 제1항 1호에 따른 순위탁 대상임 -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단순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임.</p> <p>따라서, 수도조례에 계량기 점검 및 교체 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 항 규정과 불합치하여 수용불가</p> <p>○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의견은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로써,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실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이고, 근로자의 고용·임금지급·근태관리·업무배치권·업무지시권 등을 자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기관으로 불법파견의 소지는 전혀 없음</p>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당해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추가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는 개정안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비용추계서 첨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당해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의 “민간 위탁할 수 있다” 는 조문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정지출의 순증가는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김 용 근